

# 행정자치부 징계·주의 요구

제 목 건축 설계공모 평가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경기도 본청

징계대상자 경기도 ○○○○○ ○○○○○ 지방○○○○ ○○○

※ 훈계대상자 경기도 ○○○○○ ○○○○○ 지방○○○○○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 ○○○은 2015. 4. 1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5. 6. 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각각 ‘○○○○○ ○○ ○○ ○○○ ○○○○’ 업체 선정을 위한 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경기도는 도내 전·월세 거주비중이 높은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4년 건립된 옛 서울대농업과학생명대의 남자 기숙사인 상록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를 건립(리모델링)키로 하고

‘○○○○○ ○○ ○○ ○○○○○○’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주)○○○○(대표자 ○○○)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2016. 5. 11. 용역계약을 체결<sup>25)</sup>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설계비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

25) 계약기간 2016.5.11.~2016. 8.12, 계약금액 496,447천원

여 추정가격이 2.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14-345)」 제34조에 따르면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발주기관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 공고<sup>26)</sup>한 제안공모 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항목에 30점, ‘수행계획 및 방법’ 항목에 70점을 각각 배점하고,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평가항목 중 (2)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sup>27)</sup>에 대해서는 아래 [표1]와 같이 5건 이상일 경우 10점, 4건 9점, 3건 8점, 2건 7점, 2건 미만일 경우 6점을 부여하도록 평가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공모 참가자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2건 미만(1건 또는 0건)일 경우 6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위 공고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대표자 ○○○), (주)○○○○(대표자 ○○○) 등 2개 업체가 공모안을 제출하였다.

---

26) 2016.3.4.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획 보고를 하였으며 2016.3.8. 설계용역 대상자 선정을 위해 ‘○○○○○ ○○ ○○○○ ○○○○’를 공고(경기도 입찰공고 제○○○○-○○) 하였다.

27) (2)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담당건축사의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 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③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의 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의 기숙사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조제1항의 “신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이어야 한다.

[표1] 심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1)담당건축사의 경력	(10) 정량평가	▪ 담당건축사의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2)담당 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10) 정량평가	▪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3)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정성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수행계획 및 방법 (70)	기	재	생 략				

위 관서 ○○○○○ ○○○○○ 지방○○○○ ○○○은 2016. 4. 5. ○○○  
○○○○ ○○○, ○○○○○○ ○○○, ○○○○○○ ○○○의 결재를 득하여  
‘○○○○○ ○○ ○○ ○○ ○○○ ○○ ○○’을 수립하고, 공모안을 제출한  
(주)○○○○(대표자 ○○○), (주)○○○(대표자 ○○○) 등 2개 업체에 대한 유  
사프로젝트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위 “심사계획”에 따르면 정량평가 항목인 담당건축사의 경력(10점)과 담당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10점)은 발주처에서 사전평가토록 하고 있고, 정성  
평가 항목인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 와 수행계획 및 방법(70)  
은 심사위원회의 채점평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모안을 제출한 (주)○○○○(대표자 ○○○)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은 4건이고 (주)○○○(대표자 ○○○)의 실적은 0건 이며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각각 ‘12년 이상’으로서 만점(10점)에 해당 된다.

따라서, 위 [표1]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주)○○○○(대표자 ○○○)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9점을 부여하고 (주)○○○(대표자 ○○○)는 6점을 부여하는  
등 정량평가 평점결과는 각각 19점, 16점을 부여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은 기존의 설계경험이 있는 경우만 평가한다고 잘못 판  
단하여 위 평가기준과 다르게 (주)○○○(대표자 ○○○)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을 0점으로 평가한 후 담당팀장과 과장 등에게 보고한 후 2016.4.7. 제안공모 심의위원회에 정량평가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동 정량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의결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당선자가 뒤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주)○○○○-(주)○○○에 대한 제안공모 평가결과

구분	(주)○○○○			(주)○○○			당선자
	합계	정량	정성	합계	정량	정성	
당초 평가결과	88	19	69	86	10	76	(주)○○○○(2점↑)
정당한 평가결과	88	19	69	92	16	76	(주)○○○(4점↑)

이후, (주)○○○는 2016.4.8. 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2016.4.14 수원지방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관할법원에서도 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6점이 아닌 0점으로 처리한 것은 평가기준을 위반한 평가라고 판결<sup>28)</sup>하였다.

따라서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위 관서 ○○○○○ ○○○○○ 지방○○○○○ ○○○은 2015. 6. 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 ○○ ○ ○○○○○○’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 추진을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근무하면서

‘○○○○○ ○○ ○○ ○ ○○○○○○’ 발주방법, 제안공모 지침서 등에 대해 위 ○○○의 보고를 받거나 협의하였으며, 특히 위 내용과 같이 (주)○○○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을 0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 ○○○ 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주)○○○의 실적평가 결과가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기준과 달리

28) 2016.5.4.결정. 평가에 있어서는 배점 기준을 위반한 평가이나 당선자 결정 무효여부에 배해서는 배점기준표에 어긋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 원칙을 이유를 들어 무효가 아님을 결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함. 이에 대해 (주)○○○는 항고장을 접수한 상태임.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은 실적이 없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위 ○○○이 평가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결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는

**[징계]** 위 관련자 중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안공모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안서 평가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